

유전자검사 동의서

병원 보관용

동의서 관리번호

검사 ID

검사대상자	성명		주소			
	전화번호	- -	생년월일	년	월	일
법정대리인	성명		전화번호	- -	관계	☐ 남 ☐ 여
	성명		전화번호	- -	관계	
유전자검사기관	기관명	쓰리빌리언	전화번호	070 - 5154 - 8746		
유전자검사	목적	☒ 1.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☐ 2. 질병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 ☐ 3. 영양,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☐ 4.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☐ 5. 개인식별 및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				
	항목	☐ 3B-EXOME ☐ 3B-GENOME ☐ 3B-VARIANT				
의뢰기관	의뢰기관명		의뢰 의사			

☐ 좌측 항목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, 검사 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재검을 포함한 추가 검사를 목적으로 검사 완료 후 최대 6개월간 검체의 보관을 요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검체의 즉시 폐기를 원하는 경우, 좌측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* 본인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해당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결과의 함의와 한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본인에 대한 유전자검사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.

	년	월	일
검사대상자			(서명 또는 인)
법정대리인			(서명 또는 인)
상담자 (의료진)			(서명 또는 인)

* 동일한 대상 및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서 작성 없이 아래 서명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년	월	일	년	월	일	년	월	일
검사대상자		(서명 또는 인)	검사대상자		(서명 또는 인)	검사대상자		(서명 또는 인)
법정대리인		(서명 또는 인)	법정대리인		(서명 또는 인)	법정대리인		(서명 또는 인)
상 담 자		(서명 또는 인)	상 담 자		(서명 또는 인)	상 담 자		(서명 또는 인)

* 유의사항

- 이 유전자검사의 결과는 10년간 보존되며,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 등 검사대상물 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대상물 및 검사동의서,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에 관한 기록물과 그 관리대장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. 다만, 보존 중에 검사대상자가 다른 검사기관이나 질병관리청으로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관할 수 있습니다.
- 유전자검사기관은 동의 받은 목적 외 검사대상물 및 관련 정보를 보존·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. 검사 후 남은 검사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구목적 및 분야,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에 기증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별지 제34호의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또는 별지 제41호의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유전자검사기관 또는 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시행하려는 유전자검사의 목적 및 검사항목, 검사대상물의 관리 방법, 동의의 철회 방법,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,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·폐업 시 검사대상물 및 관련 기록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,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방법, 유전자검사 결과의 한계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.

* 구비서류: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
유전자검사 동의서

쓰리빌리언 송부용

동의서 관리번호

검사 ID

검사대상자	성명		주소					
	전화번호	- -	생년월일	년	월	일	성별	☐ 남 ☐ 여
법정대리인	성명		전화번호	- -	관계			
유전자검사기관	기관명	쓰리빌리언	전화번호	070 - 5154 - 8746				
유전자검사	목적	☒ 1.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☐ 2. 질병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 ☐ 3. 영양,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☐ 4.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☐ 5. 개인식별 및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						
	항목	☐ 3B-EXOME ☐ 3B-GENOME ☐ 3B-VARIANT						
의뢰기관	의뢰기관명		의뢰 의사					

☐ 좌측 항목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, 검사 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재검을 포함한 추가 검사를 목적으로 검사 완료 후 최대 6개월간 검체의 보관을 요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검체의 즉시 폐기를 원하는 경우, 좌측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* 본인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해당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결과의 함의와 한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본인에 대한 유전자검사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검사대상자 (서명 또는 인)

법정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상담자 (의료진) (서명 또는 인)

* 동일한 대상 및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서 작성 없이 아래 서명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년	월	일	년	월	일	년	월	일
검사대상자	(서명 또는 인)		검사대상자	(서명 또는 인)		검사대상자	(서명 또는 인)	
법정대리인	(서명 또는 인)		법정대리인	(서명 또는 인)		법정대리인	(서명 또는 인)	
상 담 자	(서명 또는 인)		상 담 자	(서명 또는 인)		상 담 자	(서명 또는 인)	

* 유의사항

- 이 유전자검사의 결과는 10년간 보존되며,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 등 검사대상물 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대상물 및 검사동의서,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에 관한 기록물과 그 관리대장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. 다만, 보존 중에 검사대상자가 다른 검사기관이나 질병관리청으로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관할 수 있습니다.
- 유전자검사기관은 동의 받은 목적 외 검사대상물 및 관련 정보를 보존·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. 검사 후 남은 검사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구목적 및 분야,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에 기증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별지 제34호의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또는 별지 제41호의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유전자검사기관 또는 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시행하려는 유전자검사의 목적 및 검사항목, 검사대상물의 관리 방법, 동의의 철회 방법,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,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·폐업 시 검사대상물 및 관련 기록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,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방법, 유전자검사 결과의 한계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.

* 구비서류: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